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민선8기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80명 → 697명(증17)(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 669명 → 684명(증15)

2) 의회사무기구 : 13명(증2)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1) 기관별

- 본 청 : 342명 → 366명(+ 24)

- 의 회 : 11명 → 13명(+ 2)

- 직속기관 : 103명 → 101명(-2)

- 사 업 소 : 53명 → 43명(-10)

- 읍 · 면 : 171명 → 174명(+3)

2) 직급별

- 정무직 : 1명

- 일반직 : 643명 → 660명(+ 17)

· 4급 : 2명

· 4~5급 : 3명

- 5급 : 32명 → 33명(+ 1)
- 6급이하 : 602명 → 618명(+ 16)
- 전문경력관 : 4명
- 별정직 : 1명
- 연구직 : 8명
- 지도직 : 27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반영
- 다. 입법예고 : 2022. 10. 8. ~ 10. 27.
-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미래지역활력과-5102(2022. 10. 7))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바. 비용추계서 : 첨부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0명이며”를 “69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9명”을 “68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7	366	13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0	358	13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 이하 소계	618	339	10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80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69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1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 관</th> <th>사 업 소</th> <th>읍 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80</td> <td>342</td> <td>11</td> <td>103</td> <td>53</td> <td>171</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43</td> <td>334</td> <td>11</td> <td>74</td> <td>53</td> <td>171</td> </tr> <tr> <td>4급</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5급</td> <td>32</td> <td>14</td> <td>3</td> <td>2</td> <td>4</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 소계</td> <td>602</td> <td>317</td> <td>8</td> <td>70</td> <td>46</td> <td>161</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td> <td></td> <td>1</td> <td>3</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급상당이하 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7</td> <td></td> <td></td> <td>27</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총 계	680	342	11	103	53	17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3	334	11	74	53	171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2	14	3	2	4	9	6급상당이하 소계	602	317	8	70	46	161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p>제2조 (정원의 총수) ----- ----- <u>697명</u>이며-----.</p> <p>1. ----- <u>684명</u></p> <p>2. ----- <u>13명</u></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 관</th> <th>사 업 소</th> <th>읍 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97</td> <td>366</td> <td>13</td> <td>101</td> <td>43</td> <td>17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60</td> <td>358</td> <td>13</td> <td>72</td> <td>43</td> <td>174</td> </tr> <tr> <td>4급</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5급</td> <td>33</td> <td>16</td> <td>3</td> <td>2</td> <td>3</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 소계</td> <td>618</td> <td>339</td> <td>10</td> <td>68</td> <td>37</td> <td>16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td> <td></td> <td>1</td> <td>3</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급상당이하 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7</td> <td></td> <td></td> <td>27</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총 계	697	366	13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0	358	13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 소계	618	339	10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총 계	680	342	11	103	53	17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43	334	11	74	53	171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2	14	3	2	4	9																																																																																																																																																																																																																																																							
6급상당이하 소계	602	317	8	70	46	161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총 계	697	366	13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0	358	13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 소계	618	339	10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정원 증원(17명)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2. 비용 추계의 전제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함.

3. 비용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인건비	686,459	721,316	758,054	796,619	836,344	3,798,792
	소계(a)	686,459	721,316	758,054	796,619	836,344	3,798,792
세입	지방세						
	교부세						
	소계(b)						
총 비용(a-b)		686,459	721,316	758,054	796,619	836,344	3,798,79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686,459	721,316	758,054	796,619	836,344	3,798,792
기 타						

5.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기준금액

※ 2022년 보수표 기준

(단위: 원)

연도 직급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5급	호봉	5	6	7
	본봉	3,103,200	3,256,400	3,414,300	3,576,600	3,742,300
6급	호봉	5	6	7	8	9
	본봉	2,611,000	2,751,700	2,895,400	3,041,900	3,019,600
7급	호봉	5	6	7	8	9
	본봉	2,349,400	2,479,600	2,612,800	2,749,300	2,882,700
8급	호봉	3	4	5	6	7
	본봉	1,924,200	2,035,900	2,153,200	2,275,100	2,399,600
9급	호봉	1	2	3	4	5
	본봉	1,715,200	1,756,100	1,813,800	1,888,500	1,981,000

(2) 수당 등 포함 금액 : 본봉의 150%

(3) 급수별 인원 :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6. 작성자 : 총무과 행정담당 황 영 미